

[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: 선체검사원(조선)]

채용 분야	선체검사원	분류 체계	대분류	15. 기계		
			중분류	08. 조선		
			소분류	01. 선박설계	02. 선체건조	04. 선박품질관리
			세분류	01. 선박기본설계	02. 선체조립	01. 선체품질관리
※ 본 직무기술서는 기존 NCS 분야를 기반으로 공단에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.						
공단 주요 사업 소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·계몽·방송 및 홍보 ○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·보급·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○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, 조사·연구 및 국제협력 ○ 선박검사업무 등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○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 ○ 해양교통 안전진단 및 해양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업 ○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·시험·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○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 및 선박 검사 제도의 연구 ○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성능인증 및 친환경 선박 등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○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관한 업무 ○ 선박의 설계·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○ 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○ 해양교통 및 선박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○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○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수반된 사업 					
직무 수행 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기본설계) 선박안전기준 및 조선공학을 기초로 주요제원 결정, 복원성 평가, 선형설계 등을 수행 ○ (선체설계) 정부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최적의 선체구조배치, 치수, 형상, 재질 등을 결정 ○ (선체조립) 정부 안전기준에 따른 건조과정을 확인하여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선박을 건조 ○ (선체품질관리) 자재, 건조과정, 완성품에 대한 도면승인 및 정부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 					
능력 단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선박기본설계) 01.선박기본계획, 04.기본도면 작성, 08.선박기본계산, 09.복원성평가, 10.선형 설계, 11. 추진기 설계 등 ○ (선체설계) 08.전선해석, 09.진동해석 등 ○ (선체조립) 01.도면검토, 02.강판(부재) 배열·배치, 12.선체 주요치수 검사작업, 15.측정·검사 등 ○ (선체품질관리) 01.품질경영목표 수립, 02.품질경영, 04.선체검사 준비, 05.선체검사 관리 등 					
자격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2(선박검사원의 자격)에 따른 자격기준.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					
필요 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법·제도) 선박안전법 관련 법적지식 ○ (기본설계) 기본도면 해독에 대한 지식, 선박톤수·의장수·건현 등 선박기본계산에 관한 지식, 복원성 평가에 관한 지식, 선박 기본치수·구조·의장품에 관한 지식, 도면배치법 및 표기방법에 관한 지식 ○ (선체설계) 조선용어 및 단위에 대한 이해, 국내외 안전기준에 관한 지식, 구조역학 기본지식, 선체 구조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, 조선 각 분야(설계, 생산, 검사 등)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 ○ (선체조립) 건조 재료에 대한 지식, 건조기준에 대한 지식, 구조부재에 대한 지식, 선체도면 전반적인 적용에 관한 이해, 용접 절차서에 대한 지식, 관련 도면에 해독에 관한 지식 ○ (선체품질관리) 정부 안전기준 및 국제선급협회(ACS) 규정에 대한 지식, 검사계획서에 대한 이해 및 적용에 관한 지식, 비파괴검사 및 해당 검사장비 적용에 관한 지식, 건조재료 및 건조공정에 대한 기본지식 					
필요 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기본설계) 건조사양서 해독능력, 기본도면에 대한 해독능력, 관련법규 및 규정 적용능력, 도면작성 프로그램(CAD 등) 활용능력, 기본계산용 프로그램 활용능력 ○ (선체설계) 도면 해독에 대한 능력, 선박안전기준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능력, 건조사양서 해석 능력, 건조사양서와 각 도면의 관계 이해능력, 구조계산 및 해석에 대한 이해능력 ○ (선체조립) 관련 도면 해독능력, 일일 건조공정 확인능력, 주요공정 이해 및 관리 능력, 강판 등 재료에 대한 구분 능력, 건조기준 및 작업조건 파악 능력, 도면의 실선 적용 적합여부 판정능력, 선체 주요치수 검사기술 ○ (선체품질관리) 건조공정에 따른 검사관리능력, 정부 안전기준 적용능력, 도면 해독 및 적용능력, 건조공정 및 품질관리 능력, 시험부위에 따른 비파괴검사 활용능력, 외관검사 적합판정 능력 					
직무 수행 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전기준 적용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○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능력 ○ 안전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의지 및 지침과 규정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노력 					
관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고문 참조 					

자격증	
직업 기초 능력	○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정보능력, 조직이해능력, 직업윤리
참고 사항	○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(www.ncs.go.kr)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(www.komsa.or.kr)

[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 : 선체검사원(항해)]

채용 분야	선체검사원	분류 체계	대분류	15. 기계			
			중분류	08. 조선			
			소분류	01. 선박설계	02. 선체건조	04. 선박품질관리	06. 시운전
			세분류	01. 선박기본설계	02. 선체설계	02. 선체조립	01. 선체품질관리
※ 본 직무기술서는 기존 NCS 분야를 기반으로 공단에서 직접 작성하였습니다.							
공단 주요 사업 소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·계몽·방송 및 홍보 ○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·보급·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○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, 조사·연구 및 국제협력 ○ 선박검사업무 등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○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 ○ 해양교통 안전진단 및 해양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업 ○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·시험·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○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 및 선박 검사 제도의 연구 ○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성능인증 및 친환경 선박 등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○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관한 업무 ○ 선박의 설계·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○ 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○ 해양교통 및 선박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○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○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수반된 사업 						
직무 수행 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선체설계) 정부 안전기준을 만족하도록 선체구조배치, 치수, 형상, 강제종류 및 시공방법을 결정 ○ (선체조립) 선체조립 공정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, 정부 안전기준에 따른 조립·탑재 여부를 확인 하여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 ○ (선체품질관리) 선박건조에 필요한 자재, 작업과정, 완성품에 대하여 승인도면 및 국내외 안전기준에 일치 하는지 검사하고 보증하는 과정 ○ (시운전) 선박 건조의 최종단계에서 도면 및 정부 안전기준에 따라 해상·계류시운전 등을 실시하여 성능 과 기능 적절여부를 점검하고 시험 운전하는 일 						
능력 단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선체설계) 08.전선해석, 09.진동해석 등 ○ (선체조립) 01.도면검토, 02.강판(부재) 배열·배치, 12.선체 주요치수 검사작업, 15.측정·검사 등 ○ (선체품질관리) 01.품질경영목표 수립, 02.품질경영, 04.선체검사 준비, 05.선체검사 관리 등 						
자격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의2(선박검사원의 자격)에 따른 자격기준.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						
필요 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법·제도) 선박안전법 관련 법적지식 ○ (선체설계) 조선용어 및 단위에 대한 이해, 국내외 안전기준에 관한 지식, 구조역학 기본지식, 선체 구조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, 조선 각 분야(설계, 생산, 검사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 ○ (선체조립) 건조 재료에 대한 지식, 건조기준에 대한 지식, 구조부재에 대한 지식, 선체도면 전반적인 적용에 관한 이해, 용접 절차서에 대한 지식, 관련 도면에 해독에 관한 지식 ○ (선체품질관리) 정부 안전기준 및 국제선급협회(IACS) 규정에 대한 지식, 검사계획서에 대한 이해 및 적용에 관한 지식, 비파괴검사 및 해당 검사장비 적용에 관한 지식, 건조재료 및 건조공정에 대한 기본지식 ○ (선장시운전) 숙력시험·조타시험·후진력 시험·투양모 시험 등 해상시운전에 관한 지식, 구명·소방 설비 및 항해설비의 작동상태에 대한 지식, 선박의 출수와 트림 계측에 대한 지식 						
필요 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선체설계) 도면 해독에 대한 능력, 선박안전기준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능력, 건조사양서 해석 능력, 건조사양서와 각 도면의 관계 이해능력, 구조계산 및 해석에 대한 이해능력 ○ (선체조립) 관련 도면 해독능력, 일일 건조공정 확인능력, 주요공정 이해 및 관리 능력, 강판 등 재 료에 대한 구분 능력, 건조기준 및 작업조건 파악 능력, 도면의 실선 적용 적합여부 판정능력, 선체 주요치수 검사기술 ○ (선체품질관리) 건조공정에 따른 검사관리능력, 정부 안전기준 적용능력, 도면 해독 및 적용능력, 건 조공정 및 품질관리 능력, 시험부위에 따른 비파괴검사 활용능력, 외관검사 적합판정 능력 ○ (선장시운전) 숙력시험·조타시험·후진력 시험·투양모 시험 등 해상시운전항목 적합판정 능력, 구명·소방 설비 및 항해설비 적합판정 능력, 선박의 출수와 트림 적합판정 능력 						
직무 수행 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전기준 적용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○ 고객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능력 ○ 안전 관련 규정 준수에 대한 의지 및 지침과 규정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노력 						

관련 자격증	○ 공고문 참조
직업 기초 능력	○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 정보능력, 조직이해능력, 직업윤리
참고 사항	○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(www.ncs.go.kr)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(www.komsa.or.kr)